

# 라이시떼

- 민사법원 판결에 의한 종교적 중립성 원칙의 적용과 혼란 -

여 은 태\*

라이시떼(Laïcité), 프랑스 공화국의 기초가 되며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교분리”를 넘어서는 프랑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과물이라고 하겠다. 다시말해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과거를 뒤로하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혹은 비종교성)을 실천하고 강조 할 것에 함의를 담고 있다.



1905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법 (La loi de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에 의하여 프랑스는 문화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공권)와 종교를 분리하였고 그 결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종교적 중립성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58년 10월4일의 프랑스 헌법 제1조는 라이시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sup>1)</sup> 이와

---

\* 프랑스 파리1대학

더불어 유럽인권협약 제 9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고 있는데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자유는 제한 되어 질수 있다.

이와 같은 라이시페의 역사성과 법적 근거하에서도 오늘날 프랑스의 라이시페에 대한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프랑스적 가치를 강조하는 극우주의자들과 프랑스내의 무슬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상대를 강제하고자하는 압박 속에서 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차별을 목표로하는 라이시페의 원칙은 공법상의 공공서비스의 중립성의 원칙과 사법상의 라이시페 적용의 모호한 개념 사이에 섞여 프랑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2013년 3월 19일의 프랑스 민사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서는 직장에서 스카프로 머리를 덮은 직원의 해고에 관한 두개의 판결로 인해 모호하던 라이시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윤곽이 명확해 졌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판결로 인해 프랑스내에서는 라이시페의 위기라는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 I.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적 단체(l'organisme prive)에서의 라이시페

첫째 판결은 파리근교의 센 생드니의 기초의료보험금고(이하 CPAM-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de Seine-Saint-Denis)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질병수당지급과 관련된 업무(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을 요하는 업무는 아님)를 하던 기술직 여직원의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sup>2)</sup>

직원이 근무하던 CPAM에서는 내부 규정(règlement intérieur) 으로 «직원들은 명확히 표현되는 방식의 의복 또는 악세서리, 특히 모자 형태로 착용하는 이슬람식의 베일

1) 1958년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2) Arrêt n° 537 du 19 mars 2013 (12-11.690) - Cour de cassation - Chambre sociale - ECLI:FR:CCASS:2013:SO00537.

등으로 그들의 그룹, 민족, 종교, 정치적 가입이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직원은 CPAM에서 근무할 시에 머리에 쓰는 이슬람식 스카프(foulard islamique)착용을 하고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CPAM은 내부규정에 반하여 직원이 한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고 또 심각성이 있는 사안임 이유로 2004년 6월 해고를 하였다. 이 해고에 대해 직원은 2005년 5월 노동중재위원회 (Le Conseil de prud'hommes-노동법원)에 그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차별을 근거로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파기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직원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 공공서비스에서의 라이시떼와 중립성의 원칙(les principes de laïcité et de neutralité)은 사법(droit privé)상의 기관에 의한 실행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서비스에 적용이 된다. 노동법의 조항이 직원들에게 적용이 된다할지라도 공공서비스의 수행에 참여되어지는 결과적 특별한 사실의 강제가 부과되어 진다면 공공서비스이다»라고 밝혔다. 또CPAM은 공공서비스의 관리 중 하나이며 직원들은 개인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들의 업무 테두리 안에서 나타내는 것은 금지된다는 특별한 강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판결은 노동법(Code du travail)상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CPAM과 같은 사법상의 단체(organisme de droit privé)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라이시떼와 공공서비스의 중립성을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프랑스 민사법원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II.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사적단체(l'organisme prive)에서의 라이시페

두 번째로는 사적단체(혹은 사인, 사적 기업)에 라이시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이다.<sup>3)</sup>

Chanteloup-les-Vignes시에 위치한Baby Loup탁아소는 협회에 의한 사립탁아소(crèche privée associative)이다. 이 탁아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은 2008년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면서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는 복장 착용을 금하는 내부규정에 반하여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출근하여 탁아소로부터 규정의 중대한 과실(faute grave)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당 직원은 노동중재위원회에 탁아소의 기만적인 해고(licenciement abusif)임을 주장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노동중재위원회와 베르사유 고등법원에서는 탁아소가 직원에게 내린 해고 사항에 대해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불복종(l'insubordination caractérisée et répétée)을 인정하며 공공서비스에서 실현되고 있는 라이시페의 원칙이 사건에 해당하는 탁아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내부규정을 인정하여 해고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직원은 최종적으로 파기원에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그 소를 제기하였으며 파기원의 판결은 앞선 판결과는 달리 직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파기원은 «공공서비스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droit privé)상의 직원(노동법의 보호 아래에 놓인 직원)에는 헌법1조의 라이시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노동법 L.1121-1, L.1132-1, L.1133-1, L.1321-3의 조항들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적, 필수적, 결정적으로 비례하여 추구하는 목표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라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라이시페 원칙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Arrêt n° 536 du 19 mars 2013 (11-28.845) - Cour de cassation - Chambre sociale - ECLI:FR:CCASS:2013:SO00536.



### III.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

파기원의 판결이 있는 당일 오후,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마누엘 발(Manuel Valls)은 국회에서 Baby Loup판결에 대한 유감을 밝히면서 «라이시떼의 위기»라고 주장하였고 사르코지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은 3월 27일자 르몽드지에 «라이시떼는 사기업에도 확대 되어야한다»<sup>4)</sup>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라이시떼의 적용에 관한 논쟁은 종식되지 않았고 논쟁은 명확하게 다시 제기되어야 하며 입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공존과 라이시떼의 정신을 허망하게 하는 법률적 공백을 채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입법 절차를 통한 라이시떼 적용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4월 8일에는 시라크정부 부터 논의되던 라이시떼 모니터링 센터(Observatoire de la laïcité)가 국무총리령에 의해 프랑소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현 정부 아래 설립이 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올랑드 대통령은 라이시떼 모니터링 센터에 수개월내에 라이시떼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을 구성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사기업들의 직원들의 종교적 상징을 가지는 의복 및 악세서리등의 착용에 관한 질문을 라이시떼 모니터링 센터에 문의하도록 하고 학교(école)에 적용될 라이시떼 헌장(charte de la laïcité)을 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라이시떼의 위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4) [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13/03/27/la-laicite-doit-s-etendre-a-l-entreprise-privee\\_3148787\\_3232.html](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13/03/27/la-laicite-doit-s-etendre-a-l-entreprise-privee_3148787_3232.html).